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장애수당 지급 업무 소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, 남구, 북구, 울주군

내 용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「장애인연금 사업안내」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¹⁾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선정 요건에 적합하면 장애수당²⁾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.

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 감사기간(2018. 2. 26. ~ 3. 16.) 중 울산광역시의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장애수당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25명의 장애인에게 2~49개월간 7,120,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.

[표]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

<단위 : 명, 원>

1)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경증장애인(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)

2) 장애수당(기초): 2013~2014(3만원/월), 2015~2018(4만원/월) / 장애수당(시설): 2013~2018(2만원/월)

시/군	합계		장애수당(기초)		장애수당(시설)	
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계	25	7,120,000	14	3,840,000	13	3,280,000
중구	3	880,000	1	120,000	2	760,000
남구	5	1,340,000	3	680,000	3	660,000
북구	5	1,660,000	2	240,000	4	1,420,000
울주군	12	3,240,000	8	2,800,000	4	440,000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88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남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,34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북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,66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울주군수는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3,24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